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제품 범위에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
포함 등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07호)
- 최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66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50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2212007호)	1
2. 최혁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12266호)	2
3. 문금주의원안(의안번호 제2212450호)	3
III . 검토의견	5
1. 녹색제품 범위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포함	5
※ 참고자료	16
1. 현행 녹색제품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현황	16
2.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요	18
3.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19
4. 친환경(유기) 축산 인증제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21
5.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개요	23

I. 제안경위

2025년 8월 6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8월 20일 최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8월 27일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2212007호)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2. 최혁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12266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등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농업 부문에서의 탄소저감 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녹색소비 촉진과 친환경 유통 구조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더불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및 제17조의3제2항제5호).

3. 문금주의원안(의안번호 제2212450호)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있음. 녹색제품은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2천만원 이상의 구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이 규정되어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킨 제품이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

임에도, 현행법상 “녹색제품”은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농산물은 관련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에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 2 및 제17조의3).

Ⅲ. 검토의견

1. 녹색제품 범위에 친환경농수산물 등 포함

개정안은 녹색제품의 범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¹⁾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²⁾을 받은 제품(윤준병의원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최혁진의원안 및 문금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주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최혁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의2(적용범위)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	제2조의2(적용범위) -----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	제2조의2(적용범위)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

현행	윤준병의원안	최혁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u>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u> 3.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은 상품</u> 3.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은 상품</u> 4. (현행 제3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³⁾으로, 현행법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재활용 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녹색제품의 범위로 규정하면서,⁴⁾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⁵⁾

이는 녹색제품 수요창출 및 기존 제품시장에서의 녹색제품 시장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24년 기준 국가기관 5,383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 9,541억원, 교육자치단체 1조 1,147억원 등 총 4조 5,755억원 규모의 녹색제품이 구매됨.⁶⁾

다만, 친환경농산물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제품임에도 현행법의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 및 의무구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
-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 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6) <참고자료 1. 현행 녹색제품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현황>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윤준병의원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최혁진의원안 및 문금주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8),

녹색제품의 품목 확대와 다양성 확보,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와 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9)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7) “친환경농산물...녹색제품에 편입하자” (농업환경뉴스, 2023.06.09.)

<<https://www.agemnews.co.kr/mobile/article.html?no=26985>, 2025.8.25.접속>

“녹색제품 구매 확 늘려라”(전북일보, 2025.06.12.)

<<http://v.daum.net/v/20250612183715880>, 2025.8.25.접속>

“녹색제품에 저탄소인증 농산물 포함해야”(남도일보, 2025.04.02.)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836>, 2025.8.25.접속>

8) 구체적으로 3가지 개정안을 비교하여 보면,

① 3가지 개정안 모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최혁진·문금주의원안의 경우 ‘**농산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규정한 반면,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전체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

②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 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최혁진의원안과 문금주의원안은 해당 내용이 없으며,

③ 최혁진·문금주의원안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저탄소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해당 내용이 없음.

9) 참고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국정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⑥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것으로 보임

첫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제품(1차 농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지만 저탄소농산물 및 친환경농수산물은 생산과정에 한하여 산정되는 인증기준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¹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둘째, 개정안에 대하여 군 급식 식재료로 고단가의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게되어 한정된 급식비 예산 내 식재료 정상 조달이 제한된다는 국방부의 의견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수급문제, 무상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높은 단가의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원활한 학교급식에의 차질 우려 등의 사유로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¹³⁾¹⁴⁾

10) 품목단위로 지정되고 있는 현(現)녹색제품과 달리 친환경농수산물은 농가·양식장 등 면적 단위로 지정·관리되는 차이도 있으며, 저탄소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간에도 인증기준 등의 차이가 있음

11) 이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개정 시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할 군·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국방부·교육부 등이 높은 단가의 친환경농수산물 의무 사용에 따른 원활한 급식 운영에 차질 등을 이유로 반대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제도개선 건의 부처의 반대 부처 설득도 병행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관 평가지표에 맞춰 구매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저탄소농산물 및 친환경농수산물 녹색제품 편입 시 기존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하락 등 애로도 예상되어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제외(현행 체계 내에서 저탄소제품 인증이 가능한 유기농식품에 대한 저탄소 인증 우선 추진 등 점진적 도입도 검토 필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2) 이외에 교육부는 학교급식 및 유치원급식의 식재료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학부모)의 선택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3) 국방부의 의견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기간 내 예산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저탄소농산물 및 친환경농수산물 의무 사용에 따른 국방부·교육부 등의 관련 예산 증액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실적집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부처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단계적 추진 및 시스템 연계 구축·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범위 확대

개정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최혁진의원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문금주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최혁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	---	--------	--------

행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교육부의 의견 중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체계상 녹색제품 의무구매대상에 지방사무와 사립학교가 포함된 점을 고려시 적용대상 제외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으며(유치원급식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적용되지 않음), 학교급식과 국공립유치원 급식 모두에 있어 예산증액과 수요증가에 따른 수급 등을 위하여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4)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혁진의원안 및 문금주의원안에 대하여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정해진 친환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저탄소·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 축산부문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상품 외에 구매 지원 대상을 “축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친환경 농산물→친환경 농축산물)

15)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농수산물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농수산물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구매실적의 수동 집계가 필요함.

현행	최혁진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 ----- ----- ----- -----.	②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5. <u>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u>	5. <u>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녹색구매지원센터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설치·운영¹⁶⁾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으로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⁷⁾ 2025년 기준 전국에 11개의 센터에 4억 원의 국고 보조가 실시중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경기센터	부산센터	제주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충북센터
개소일자	'13.05.27	'13.06.27	'14.07.08	'15.08.13	'17.11.27	'14.08.27
위탁기관	안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 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대전 주부 모니터링봉사단	세종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청주녹색 소비자연대
인원	4명 (상근1, 비상근3)	3명 (상근2, 비상근1)	4명 (상근2, 비상근2)	3명 (상근1, 비상근2)	2명 (상근 2)	2명 (상근1, 비상근1)
센터명	광주센터	인천센터	경남센터	전남센터	전북센터	
개소일자	'18.07.26	'18.08.27	'21.06.30	'24.09.01	'25.09.19	
위탁기관	광주소비자 공익네트워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경남 환경재단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전북여성 소비자연합	
인원	3명 (상근 3)	3명 (상근2, 비상근1)	3명 (상근1, 비상근2)	4명 (상근 4)	3명 (상근1, 비상근2)	

※자료: 기후부

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1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다만, 녹색제품 또는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촉진에 대한 홍보사업이 법정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색제품 소비 및 녹색생활 실천 확대를 위하여 법정 사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최혁진의원안),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문금주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홍보업무 부분에 대한 안정적 센터운영과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 등 녹색제품 구매 증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등 현행 지침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이 이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센터에서도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 현행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내 사업운영 범위에는 홍보를 포함한 녹색제품 정보제공이 있고, 지원센터 평가내용에도 녹색제품 홍보 등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¹⁸⁾.

18)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8조(위탁기관 사업계획 수립) ③ 신청자는 세부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사업운영 범위에 따라 내용을 작성한다.

둘째,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대상을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에 한정하기 보다는 전체 ‘녹색제품’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후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홍보사업 대상은 전체 ‘녹색제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센터의 설립근거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¹⁹⁾은 전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운영 범위 >

구 분	주 요 내 용
녹색제품 정보제공	• 지역사회와 개인이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친환경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캠페인·협력 등의 사업 -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녹색제품 체험단 운영 및 녹색제품 관련 정보제공 - 녹색제품 소비 관련 온·오프라인, 미디어 등 매체홍보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소비교육	• 지역사회와 개인이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친환경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등의 사업 - 녹색 소비생활 교육 - 녹색소비 교육 전문가 양성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매장 확대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의 사업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지자체 연계) - 녹색매장 모니터링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시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생산 유도 및 환경성 품질 유지 모니터링 등의 사업 - 환경표지 인증 지원 (대상기업 DB구축, 인증설명회, 인증수수료 지원(지자체 연계)) -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1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자료

1. 현행 녹색제품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현황

□ 녹색제품

- **(환경표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부여('92.6.부터 시행)
 - *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GR)**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GR)”에 대하여 품질인증('97~, 산업부)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20.7.부터 시행)

< 녹색제품 비교 >

(‘25.8월 기준)

구 분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GR)	저탄소제품
제품(품목)수		18,354개	428개	1,291개
제품 예시		인쇄용지, 토너카트리지, LED 등기구 등	전자복사용지, 순환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등	순수(물), 디렉스타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등
인증 유효기간		3년	4년	3년
인증 소요 기간		30일	90일	90일
인증비용		인증신청 수수료 (시험분석비 별도)	국가에서 부담 (제품시험분석비용 기업부담)	인증신청 수수료
인증 기준	환경성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 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재활용성	온실가스 감축
	품질	고려(KS 등)	고려	미고려
	비고	제품 중심의 인증	재활용성·기술 중심의 인증	공정 중심의 인증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의무구매 현황

○ '24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4.57조원 규모임

(단위 : 억원, %)

구 분		'22년		'23년		'24년	
		녹색구매	구매율	녹색구매	구매율	녹색구매	구매율
계		42,684	31.1	47,606	33.3	45,755	33.3
국가기관		4,692	28.3	5,049	29.5	5,383	27.6
지 자 체		17,570	26.5	19,030	27.7	19,541	34.0
교육자치단체		11,125	49.7	13,257	49.7	11,147	44.4
공기업	시장형	1,308	46.6	1,151	54.4	1,620	16.3
	준시장형	3,666	21.5	3,784	25.1	3,239	27.3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340	64.3	442	58.8	396	65.4
	위탁집행형	2,163	31.7	2,310	35.9	2,206	31.4
지방공기업		969	37.3	1,218	39.4	1,388	34.4
지자체출연연구원		7	71.6	6	59.6	5	55.5
지자체출자출연기관		193	38.0	239	40.1	-	-
기타공공기관		651	39.5	1,120	47.7	828	44.8

* 공공 녹색구매 이행대상 확대(국·공·사립학교·특수법인 등, '25.1 시행)

2.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 기여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정의**
 -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제조→수송→사용→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
 -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장효율 개선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동종제품의 평균 배출량 이하(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을 경우 자사 제품 대비 최소탄소감축률 3.3% 적용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추진현황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추진성과)**
 - 환경성적표지 제도 시행('01) 및 인증기관 지정('07)
 - 탄소성적표지 제도 도입('09) 및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11)
 - 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 제도 →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16)
 - 환경성적표지 도안 변경('01년 제정, '17년 개정)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이 '녹색제품' 반영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포함('20.7.~)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시행('20.7.30.) 및 「저탄소제품 기준」고시 제정('20.8.24.)

3.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농림축산식품부)

(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 개 요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생산·인증된 농산물(유기·무농약농산물) 및 가공품(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4종)

인증 구분	정 의	인증로고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을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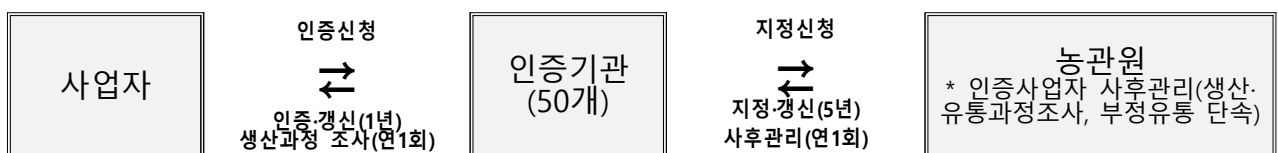
□ 인증 현황

- '24년 기준 약 49천 농가(전체의 5.2% 수준), 68천ha(전체의 4.5% 수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약 47만톤 내외 출하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농가수 (호)	유 기	25,362	24,906	24,072	24,287
	무농약	29,992	25,816	25,448	24,381
	소 계(비율%)	55,354(5.3)	50,772(5.0)	49,520(5.0)	48,668(5.2)
면적 (ha)	유 기	40,663	39,624	37,825	37,617
	무농약	34,772	30,503	31,587	30,548
	소 계(비율%)	75,435(4.9)	70,127(4.6)	69,412(4.6)	68,165(4.5)

□ 인증 절차

- 생산자 등이 민간 인증기관(50개소)에 인증 신청, 인증기관의 서류 및 현장 심사 후 인증서(유효기간 1년) 교부



(2)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요

□ 개 요

- (추진 배경) 지속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제 추진
- (관련규정)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제60조·제66조 및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 (개념)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 저탄소 농업기술 :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 사업 내용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국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

* 농산물소득자료집(농진청) 등 5개년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사전요건) 친환경·GAP 인증 취득,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 연도별 추진 실적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인증건수 (건)	7	34	91	194	292	478	598	646	706	798	974	1,130	1,252
농가수 (호)	60	479	570	1,294	1,989	2,763	3,373	3,976	4,700	5,753	8,098	9,085	11,028
인증면적 (ha)	92	815	674	1,302	2,151	3,564	4,367	4,855	5,657	6,751	9,329	10,338	14,209
감축량 (톤CO ₂)	311	2,075	6,407	9,154	11,901	25,963	68,455	74,947	77,769	80,205	86,238	99,875	111,641

4. 친환경 축산 인증제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농림축산식품부)

(1) 친환경(유기) 축산 인증제 개요

- ☐ **[도입배경]** 축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 먹거리 수요를 반영하여 '01.7월 유기 축산물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 **[인증기준]** 100% 유기사료 급여, 사육밀도 준수,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 급여
 -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 * 질병발생 시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 인증 전환기간 재이행 후 출하 가능
 - 축사, 축사 주변 및 사료 등 자재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
 -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구 만족시킬 수 있는 축사·방목환경 구성

☐ **[인증 절차]**

신청*⇒접수⇒심사⇒서류·현장심의(축분·생산품검사 등)⇒인증 통보

*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 생산계획서, 경영관련자료 등 첨부

- ☐ **[사후 관리]** 잔류물질검사, 생산·제조·가공·취급과정 서류 및 현장조사 후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부적합) 및 고발(인증품 사칭)

☐ **일반(무항생제)축산과 차이점**

구분	일반축산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관련법령	축산법		친환경농어업법
방목	-		필요
동물용의약품 사용	약사법 상 안전사용기준 (휴약기간 등) 준수	질병취약시기 한정,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 가능	질병발생시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 (전환기간 또는 휴약기간 2배 중 긴 경우 준수)
유기합성 농약 사용	-		축사 및 축사주변 사용금지
사료	-		유기사료 100%

☐ **친환경(유기) 인증현황 [24.12월말 기준, 여러 축종 사육할 경우 중복 집계]**

구 분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오리알	기타
유기	농가수(호)	122	32	2	4	-	52	27	-	5
	사육두수(천)	263	3	2	21	-	8	230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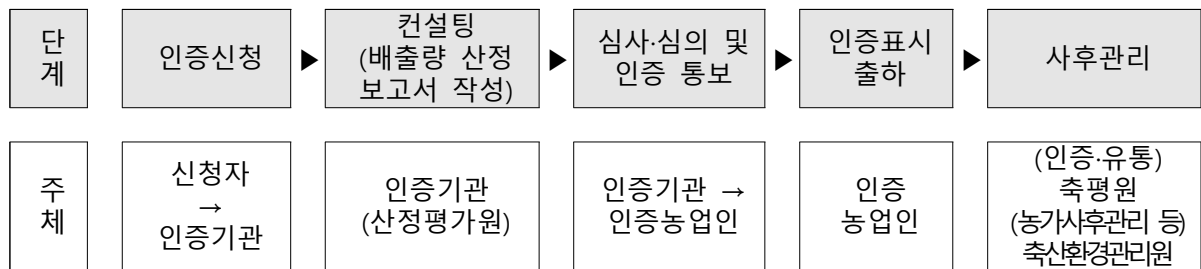
(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 **[배경]** 농장의 저탄소 생산 방식 확산을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추진개요]**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여 축종별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
 - (자격요건)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깨끗한 농장, 방목생태 농장, 환경친화 농장, 동물복지 농장, HACCP, 유기, 무항생제 등 7개) 중 1개 이상 취득한 농장
 - (탄소감축기술)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절감 등

분류	저탄소 농업기술명	분류	저탄소 농업기술명
A. 사양관리	정밀사육	B. 가축분뇨 관리	질소저감사료 급여
	MSY 생산성 향상		분뇨의 비농업계 이용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깔짚 관리(로터리 교반 등)
	저메탄사료 급여		피트 내 슬러리 관리
	부산물 사료 급여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사료효율 개선	C. 에너지 절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축사 등)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조사료 자가 생산		
B. 가축분뇨 관리	경제수명 향상	D. 기타	사육밀도 적정성
	강제 공기 공급		나무식재 활용
	기계 교반		유통망 연계
	액비화·정화처리		축사 악취방지 노력

□ 인증 절차

※ (인증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인증 현황]** '23년 71호, '24년 190호, '25년 339호 ※'23년부터 제도 도입

구분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	한우	-	-	-	2	2	4	2	7	37	10	6	1	71	105
	한우	1	-	-	8	3	1	1	4	6	6	-	4	34	
'24	돼지	1	1	1	9	-	-	35	5	10	5	33	4	104	
	젓소	-	-	-	7	5	-	9	18	6	-	1	6	52	
'25	한우	-	-	-	7	-	1	1	12	21	-	-	-	42	
	돼지	-	1	3	12	1	1	40	12	64	7	39	7	187	
	젓소	-	-	-	98	-	1	3	1	4	1	-	1	110	
계		2	2	4	143	11	8	91	59	148	29	79	23	600	

5.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해양수산부)

□ 개 요

-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유효기간) 1년(인증 유지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 필요)
- (등록현황) 유기수산물 169건, 무항생제수산물 132건, 활성처리제 비사용 0건*, 유기가공식품 104건('25.7 기준)

* 인증실적이 저조한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에 통폐합하는 등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추진 중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4종)

인증명 (등록대상)	주요 내용	인증표시
유기수산물 (양식수산물)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사료 및 영양관리 등 12개 부분, 44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 - 유기수산종자 및 유기사료 사용 - 양식 장비와 시설 청소 시 허용물질만 사용 -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 -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10 이하	
무항생제수산물 (양식수산물 (해조류 제외))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사료관리 등 12개 부분, 35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 - 유기수산물 인증기준과 거의 유사하나, 종자·영양·질병관리 등 일부 기준이 유기수산물에 비해 완화 -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 -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2 이하	
활성처리제 비사용 (미역 등 해조류 7종)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양식관리, 가공관리 등 8개 부분, 23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잡조 및 병해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 - 해조류를 대상으로 하여,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과 달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생산기자재, 사료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외 - 가공관리에 관한 기준 포함	
유기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유기수산물 및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하고 생산시설, 가공공정 등 8개 부분, 33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생산하는 수산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

□ 등록 및 관리절차

단계	인증신청 (4일)	서류심사 (2주)	현장심사 (3주)	인증서 발급(1일)	사후관리
내용	생산계획서 경영관련 자료 등 첨부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	인증등록 통보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반기1회)
담당	신청업체	수품원 인증기관	수품원 인증기관	수품원 인증기관	수품원 인증기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